"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7684
등록일자	2016.2.26.
결 재 일 자	2016.2.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상은	조춘식	김구연	02/26 김 효길	
협 조 자				

『강남복지재단』정관변경 승인계획

관련근거

-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정관의 변경)

□ 강남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완료

- **일** 시: 2016. 1.22.(금) 16:00
- O 장 소: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 O 참석인원: 이사 10명(재적이사 13명 중 10명), 감사 2명

□ 정관변경 내용

- **제12조(업무보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출기한** 9월말까지 ⇨ 10월말까지
- O 제17조 (임원의 선임) "구청장이 임명한다" 조항 신설
-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 개최기한 회계연도 1월전까지 ➡ 회계연도 2월전까지
- O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서면결의 조항 삭제
- 별지 『재산목록』
 - 기본재산 취득원인 용어 변경민간후원금(기본재산 적립용) ▷ 강남구출연금
 - 기본재산 평가액 증액 변경
 2,408,150,000원 ➡ 4,020,750,000원

2016. 1.

강 남 구 (복지정책과)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강남복지재단 정관
-1-141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추진경위	•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따라 구청장의 숭인 필요
예산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게 단기 정	• 비예산
수 혜 자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및 범위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신규:]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사 례 	• 해당사항 없음
전 문 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자 문 	• 전문회계법인과 합동 점검

『강남복지재단』정관변경 승인계획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및 관련 법령에 적합토록 정관변경을 승인하여 합리적으로 강남복지재단을 운영코자 함

I

관련근거

- □ 서울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강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2.27.>
- □ **강남복지재단 정관 제34조(정관의 변경)**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Π

재단 승인요구(안)

□ 강남복지재단 이사회 개최 완료

O 일 시: 2016. 1.22.(금) 16:00

O 장 소: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O 참석인원: 이사 10명(재적이사 13명 중 10명), 감사 2명

O **안건의결**: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외 8건

O 의결정족: 재적이사 2/3이상 찬성

O **안건처리**: 참석이사 전원 찬성

□ 정관변경 내용 및 사유

해당조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제12조 (업무보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 산서 제출기한 9월말 까지 ⇨ 10월말까지	○ 업무추진이 원활하도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출기한을 합리적 으로 조정
제17조 (임원의 선임)	○"구청장이 임명한다" 조항 신설	○임원의 선출 방법 추가 기재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 정기이사회 개최기한 회계연도 1월전까지 □ 회계연도 2월전까지	○ 정관12조의 변경과 일치하도록 이사회 개최기한 조정
제29조 (서면결의 금지)	○서면결의 조항 삭제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서면결의 조항 삭제
별지 『재산목록』	 기본재산 취득원인용어 변경 민간후원금 (기본재산 적립용) 라구출연금 (민간후원금 성격) 기본재산 평가액증액 변경 2,408,150,000원 ☆ 4,020,750,000원 	 재단이 기부금지정단체로 등록 (2015.3.31.字)되기 전에는 강남 구청에서 민간후원금(기본재산 적립용)을 받아 세외수입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액만큼 구예산으로 편성한 후, 출연금으로 재단에 교부하는 절차를 거쳤음 재원은 민간후원금 성격이나 결과 적으로 강남구에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교부하였기에 별지 재산목록에 출연금으로 변경 기재하고 그 출연금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비고란에 민간후원금으로 기재토록 변경함(서울시 구두안내)

□ 신·구조문 대비표

혀 햇 개 정 안 제12조(업무보고) ①법인은 다음 사업연 제12조(업무보고) ①법인은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말까지 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은 회계연도 개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은 회계연도 시 1개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 개시 1개월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 제17조(임원의 서임) ①임원은 이사회에 서 선출한다. <신설> 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②정기이사회는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1월전까지 연1회 소집한다. 매 회계연도 2월전까지 연1회 소집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①이사회의 의결 제29조(서면결의 금지) ①이사회의 의결 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이사회** 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단서조항** 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 삭제> 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별지]

재산 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u>삭제</u>
현금	민간후원금	408,150,000	<u>기본재산</u>
	<신설>		
	<신설>		
합계		2,408,150,000	

재산 구분	취득원인	평가액(원)	비고
현금	강남구출연금	2,000,000,000	
현금	강남구출연금	408,150,000	만序治금
현금	<u>강남구출연금</u>	1,251,600,000	만한원금
현금	민간후원금	361,000,000	
합계		4,020,750,000	

${\rm I\hspace{-.1em}I\hspace{-.1em}I}$

재단요구안 검토 결과

정과조무
\circ L \pm L

0	제12조(업무보고)	적정(승인)
0	제17조(임원의 선임)	적정(승인)
0	제24조(이사회의 소집)	적정(승인)
O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적정(승인)

□ 별지 기본재산 ……… 적정(승인)

IV

행정사항

- □ 강남복지재단 정관변경 승인 결과 통보 ……… 복지정책과
- □ 정관변경에 따른 서울시 승인요청 ······ 강남복지재단

붙임 강남복지재단 정관 1부.